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2021.11.16.부터 민영주택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1.10.29.부터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하여 청약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상황 해제 시까지)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1단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은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hillstate-hec.co.kr/ms-centra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에는 당첨자(계약자)와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감염 확산 예방 조치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정부지침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방역당국 및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견본세대 관람인원 제한 등 견본주택 안내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오픈에 따른 고객상담은 분양 상담전화(052-258-3235)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1. 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2단지로서 1단지와 사용검사, 착공, 청약신청일정, 계약일자, 중도금 납부일자 등 단지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급 주택형, 분양가, 당첨자발표일 등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1단지와 2단지는 당첨자발표일이 상이하므로 단지별로 1인 1건 각각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1단지, 2단지 증복당첨 시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1단지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증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18.)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

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1. 11. 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정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O | O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マイ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illstate-hec.co.kr/ms-central>)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 12. 07.)부터 아래 기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증을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 시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며,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2. 11. 28. (월) | 2022. 11. 29. (화) | 2022. 11. 30. (수) | 2022. 12. 07. (수) | 2022. 12. 19. (월) ~ 2022. 12. 21. (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26252호(2022. 11. 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6-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9~42층 2개동 총 301세대

[특별공급 174세대(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60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3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영 주택 | 2022000823 | 01 | 059.8418A | 59A | 59.8418 | 20.0855 | 79.9273 | 40.2496 | 120.1769 | 10.5046 | 152 | 15 | 23 | 30 | 5 | 15 | 88 | 64 | 4 |
| | | 02 | 059.7033B | 59B | 59.7033 | 19.9819 | 79.6852 | 40.1564 | 119.8416 | 10.4803 | 35 | 3 | 5 | 7 | 1 | 3 | 19 | 16 | 1 |
| | | 03 | 074.6339A | 74A | 74.6339 | 24.2936 | 98.9275 | 50.1990 | 149.1265 | 13.1012 | 38 | 4 | 6 | 8 | 1 | 4 | 23 | 15 | 1 |
| | | 04 | 084.5750A | 84A | 84.5750 | 27.6640 | 112.2390 | 56.8853 | 169.1243 | 14.8463 | 76 | 8 | 11 | 15 | 2 | 8 | 44 | 32 | 2 |
| | | 합 계 | | | | | | | | | | 301 | 30 | 45 | 60 | 9 | 30 | 174 | 127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2)×0.3025 또는 공급면적(m^2)÷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흥보 제작물 등은 약식표기 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약식 표기 | 동·호 | 층 | 세대 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2026.07.27 | |
| | | | |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이내 | | | | | | | | |
| 59A | 201동 2호 202동 3호 | 4~5층 | 4 | 72,758,400 | 510,241,600 | 583,000,000 | 20,000,000 | 38,300,000 | 58,300,000 | 58,300,000 | 58,300,000 | 58,300,000 | 58,300,000 | 58,300,000 | 58,300,000 | 174,900,000 |
| | | 6~9층 | 8 | 74,256,000 | 520,744,000 | 595,000,000 | 20,000,000 | 3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59,500,000 | 178,500,000 |
| | | 10~18층 | 18 | 75,753,600 | 531,246,400 | 607,000,000 | 20,000,000 | 40,700,000 | 60,700,000 | 60,700,000 | 60,700,000 | 60,700,000 | 60,700,000 | 60,700,000 | 60,700,000 | 182,100,000 |
| | | 20~29층 | 20 | 77,376,000 | 542,624,000 | 620,000,000 | 20,000,000 | 42,000,000 | 62,000,000 | 62,000,000 | 62,000,000 | 62,000,000 | 62,000,000 | 62,000,000 | 62,000,000 | 186,000,000 |
| | | 30층이상 | 26 | 78,873,600 | 553,126,400 | 632,000,000 | 20,000,000 | 4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189,600,000 |
| | 201동 3호 202동 2호 | 4~5층 | 4 | 73,756,800 | 517,243,200 | 591,000,000 | 20,000,000 | 3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177,300,000 |
| | | 6~9층 | 8 | 75,379,200 | 528,620,800 | 604,000,000 | 20,000,000 | 4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60,400,000 | 181,200,000 |
| | | 10~18층 | 18 | 76,876,800 | 539,123,200 | 616,000,000 | 20,000,000 | 4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61,600,000 | 184,800,000 |
| | | 20~29층 | 20 | 78,499,200 | 550,500,800 | 629,000,000 | 20,000,000 | 4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62,900,000 | 188,700,000 |
| | | 30층이상 | 26 | 80,121,600 | 561,878,400 | 642,000,000 | 20,000,000 | 4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192,600,000 |
| 59B | 202동 1호 | 4~5층 | 2 | 74,006,400 | 518,993,600 | 593,000,000 | 20,000,000 | 3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59,300,000 | 177,900,000 |
| | | 6~9층 | 4 | 75,504,000 | 529,496,000 | 605,000,000 | 20,000,000 | 4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181,500,000 |
| | | 10~18층 | 9 | 77,126,400 | 540,873,600 | 618,000,000 | 20,000,000 | 4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61,800,000 | 185,400,000 |
| | | 20~29층 | 10 | 78,748,800 | 552,251,200 | 631,000,000 | 20,000,000 | 4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 | 30층이상 | 10 | 80,246,400 | 562,753,600 | 643,000,000 | 20,000,000 | 4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192,900,000 |
| 74A | 201동 4호 | 4~5층 | 2 | 93,225,600 | 653,774,400 | 747,000,000 | 20,000,000 | 5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74,700,000 | 224,100,000 |
| | | 6~9층 | 4 | 95,222,400 | 667,777,600 | 763,000,000 | 20,000,000 | 56,300,000 | 76,300,000 | 76,300,000 | 76,300,000 | 76,300,000 | 76,300,000 | 76,300,000 | 76,300,000 | 228,900,000 |
| | | 10~18층 | 9 | 97,219,200 | 681,780,800 | 779,000,000 | 20,000,000 | 5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233,700,000 |
| | | 20~29층 | 10 | 99,216,000 | 695,784,000 | 795,000,000 | 20,000,000 | 5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238,500,000 |
| | | 30층이상 | 13 | 101,212,800 | 709,787,200 | 811,000,000 | 20,000,000 | 61,100,000 | 81,100,000 | 81,100,000 | 81,100,000 | 81,100,000 | 81,100,000 | 81,100,000 | 81,100,000 | 243,300,000 |
| 84A | 201동 1호 202동 4호 | 4~5층 | 4 | 98,467,200 | 690,532,800 | 789,000,000 | 20,000,000 | 5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78,900,000 | 236,700,000 |
| | | 6~9층 | 8 | 100,588,800 | 705,411,200 | 806,000,000 | 20,000,000 | 6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241,800,000 |

| | | | | | | | | | | | | | | |
|--|--|--------|----|-------------|-------------|-------------|------------|------------|------------|------------|------------|------------|------------|-------------|
| | | 10~18층 | 18 | 102,710,400 | 720,289,600 | 823,000,000 | 20,000,000 | 6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82,300,000 | 246,900,000 |
| | | 20~29층 | 20 | 104,832,000 | 735,168,000 | 840,000,000 | 20,000,000 | 6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84,000,000 | 252,000,000 |
| | | 30층이상 | 26 | 106,953,600 | 750,046,400 | 857,000,000 | 20,000,000 | 6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85,700,000 | 257,100,000 |

※ 201동, 202동 19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8418A | 059.7033B | 074.6339A | 084.5750A |
| 약식표기 | 59A | 59B | 74A | 84A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시행위탁자,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가 분양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절삭)하였고, 각각의 버림(절삭)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결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시공상의 사유나 편의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별, 호별,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의 증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응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59A | 59B | 74A | 84A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3 | 1 | 1 | 6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0 | 0 | 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0 | 1 | 1 |
| | 중소기업 근로자 | 7 | 1 | 1 | 3 |
| | 장애인 | 2 | 1 | 1 | 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3 | 5 | 6 | 11 | 4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0 | 7 | 8 | 15 | 60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1 | 1 | 2 | 9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5 | 3 | 4 | 8 | 30 |
| 합 계 | 88 | 19 | 23 | 44 | 17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

| | <p>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울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구분 | 추천기관 | 구분 | 추천기관 |
|------------------|------------------|----------|-------------------|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5),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윤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소득 확인 기준

| 해당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2022. 11. 18.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8,687,332원~ 10,424,797원 |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10,424,798원~ 13,899,730원 |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추첨제, 30%)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사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 | | 토지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윤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등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소득 확인 기준

| 해당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2022. 11. 18.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총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1인 가구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토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2. 11. 28. (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2022. 11. 29. (화) 09:00~17:30 2022. 11. 30. (수) 09:00~17:30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 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 O |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 | O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O |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p>※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p> |
| O |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p>※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p>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 O | |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p>※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p> |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p> |
| | O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p>※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p>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분양사무소 비치] 임신증인 경우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 | O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 | | | | |
|---------------|---|-------------------------|----------|---|
| | | | 세대원 |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및 배우자 | [분양사무소 비치] 임신증인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세대원 | [분양사무소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만30세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 : 직계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
| | ○ | | 자녀 |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 ○ |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건강보험자격 특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특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
|--------------|--|--------------|----------|---|
| | <input type="radi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세대원 | [분양사무소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input type="radio"/> | 위임장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input type="radio"/>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 <input type="radi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서명 또는 날인 |
| | <input type="radio"/>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 [분양사무소 비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대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해당자격 |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근무 | 계속 근무자 / 전년도 이직자 | ④ 재직증명서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④ 해당직장 ⑤ 해당직장/세무서 |
| | | 금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이직자 | ④ 재직증명서 ⑤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 | ④⑤ 해당직장 |
| | 휴직 |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 | ④ 재직증명서 ⑤ 정상근무 개월에 대한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④⑤ 해당직장 |
| | |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 | ④ 재직증명서 ⑤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④⑤ 해당직장 |
| | |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 (계속 휴직) | ④ 재직증명서 ⑤ 본인과 동일한 직장/직급/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월평균 소득 추정 ※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직 전 정상재직기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④⑤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④ 재직증명서 ⑤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④⑤ 해당직장 |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④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⑤ 세무서 |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④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⑤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④ 국민연금공단 ⑤ 세무서 | |
| | 신규사업자 | ④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국민연금공단 ⑤⑥ 세무서 | |
|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 | ④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④ 세무서 | |

| | | | |
|----|----------------------------------|--|--------------------------------|
| | | ⑥ 법인등기부등본 | ⑥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④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 | ④ 해당직장/세무서 |
| 기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④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⑥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④ 해당직장 ⑥ 국민연금공단 |
| 무직 | 전년도 1월 1일 ~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 ④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⑤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해당 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해당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소득입증제출서류를 준용함 | ④ 해당직장/세무서 ⑥ 접수장소 ⑦ 해당직장 |
| | 소득이 없는 경우 | ④ 비사업자 확인각서 ⑥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 | ④ 접수장소 ⑥ 세무서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④ 재직증명서 | ④ 해당직장/세무서 |
| | 자영업자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④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④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④ 세무서 ⑤ 해당직장 |
| | 자영업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④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 제출 | ④ 세무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④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④ 세무서 ⑤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 날인 불필요)

※ 소득세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④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⑤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④⑤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⑥ 행정복지센터 ⑦ 위택스(www.wetex.go.kr) |
|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V 당첨자 발표, 자격확인 서류검수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 12. 07. (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 12. 08.(목)~2022. 12. 18.(일) (10:00~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p>(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 12. 19.(월)~2022. 12. 21.(수)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p>(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p>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지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지를 선정<ol style="list-style-type: none">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 | |
|--|--|
| | <p>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견본주택에 내방 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등·호수 및 미계약 등·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등·호수 및 미계약 등·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등·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등·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등·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등·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2. 12. 07.(수) ~ 2022. 12. 16.(금) (10일간)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 12. 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기본서류 | O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 | | | | |
|-----------------|--------------------------|--------------------|-------------|--|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O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 | O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 | O | 무주택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건축물대장등본(발급용으로 발급),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 |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자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임 |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로 대체함 | | | ※ '공통기본서류' 및 '해외근무자(단신부임)'와 중복되는 서류는 추가 제출 불필요 |
| 일반공급 | O | 가점산정기준표 | 본인 |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자녀 |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비속 | •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
|--------------------|--|---------------|------|--|
| | | | | ※ 발급기간 : 직계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input type="radio"/> | 기존1주택 처분서약 자료 | 해당주택 | • 처분 서약한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input type="radio"/> | 위임장 |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input type="radio"/>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 <input type="radi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서명 또는 날인 |
| | <input type="radio"/>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 [분양사무소 비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18.)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 <input type="radio"/>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 |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 | <input type="radio"/> | 신분증 | 본인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input type="radio"/>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본인 | |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공급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②공급금액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
| | <input type="radio"/> | 인감도장 | 본인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 | <input type="radio"/>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총 실제거래가격(⑨번) 항목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함 |
|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input type="radio"/> | 위임장 | - | [분양사무소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input type="radio"/>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 <input type="radi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input type="radio"/>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대리인 | [분양사무소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 |

※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고 당첨자격이 적격으로 확인된 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18.)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40-013-983868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 분양대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분양대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 시 사용되었던 주택형 및 주택형(약식)으로 계약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설계도서 상 주택형 및 주택형(약식)으로 표기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 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증도금 대출 안내

- 증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을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증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증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증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증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료, 대출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율은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청탁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사용승인(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VI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공사비

(단위:원, VAT포함)

| 구분 | 59A | 59B | 74A | 84A |
|--------|------------|------------|------------|------------|
| 발코니확장비 | 10,000,000 | 19,500,000 | 22,000,000 | 23,000,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40-013-983843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 ※ 발코니확장 공사는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발코니확장 공사비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를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 발코니확장 공사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부사항은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계약 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색상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원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조명기구의 수량 및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선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가상한제 비대상입니다.
- 비확장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및 욕실에 인접한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턱트 및 욕실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무상옵션(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가능)

| 주택형 | 옵션명 | 위치 | 내용 | 선택1 | 선택2 |
|------------------------------------|---------------|--------|----------|-------|-------------------------|
| 전타입 | ドレス룸 선택형 | 침실1 | 파우더+ドレス룸 | 분리형 | 통합형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 74A, 84A (파우더+ドレス룸 분리형 선택 시 택1) | 파우더장 선택형 | 침실1 | 파우더장 | 좌식 | 입식 |
| 전타입 | 침실2, 3 가변형 벽체 | 침실2, 3 | 가변형 벽체 | 개별 사용 | 통합 사용 |

※ 상기 무상옵션 선택품목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 유상옵션

(단위:원, VAT포함)

| 옵션명 | 내용 | 59A | 59B | 74A | 84A |
|------|-------------------|--------------------|-----------|-----------|-----------|
| 공간특화 | 침실2, 3 가변형 벽체 선택형 | 홈오피스(슬라이딩도어+복도장) | 4,000,000 | 3,900,000 | 4,000,000 |
| | 알파룸 확장 패키지 | 알파룸 확장+시스템가구+주방장식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4,800,000 |

| | | | | | | | | |
|-------|-------------------------|---|---|-----------|-----------|-----------|-----------|-----------|
| 마감 특화 | 현관클린 패키지 | 현관 중문(3연동) | | 1,500,000 | 1,700,000 | 1,500,000 | 1,500,000 | |
| | | 현관중문+에어샤워 패키지 [현관에어샤워기+핸드형브러쉬+클린박스(마그네틱박스+빌트인살균기)] | | 2,300,000 | 2,500,000 | 2,300,000 | 2,300,000 | |
| | 욕실특화 패키지 | 공용욕실 | 욕실장 디자인 상향+타일,욕조,도기,수전,악세서리 마감특화 +스마트 욕실 환풍기 |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 | 부부욕실 | 샤워부스,욕실장 디자인 상향+타일,도기,수전,악세서리 마감특화 +스마트 욕실 환풍기+스마트 샤워기 캔버스 H | | | | | |
| | 바닥 마감 특화 | 거실, 주방 바닥 마감 특화 | | 1,400,000 | 1,400,000 | 1,600,000 | 1,800,000 | |
| | 주방 고급화 패키지 | 벽/상판 세라믹타일+주방가구특화(유리플랩장 상/하부장 조명 외) +수전특화+사각 싱크볼 | | 5,900,000 | 5,300,000 | 9,500,000 | 7,300,000 | |
| | 복도벽 마감 업그레이드 | 복도벽 업그레이드 | | 1,800,000 | 1,600,000 | 1,000,000 | 1,100,000 | |
| 가구 특화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 선택 |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수납시스템가구 | | 4,900,000 | 4,900,000 | 4,900,000 | 5,300,000 | |
| | 불박이장 업그레이드 | 수납 강화형 불박이장 | | 800,000 | 800,000 | 900,000 | 800,000 | |
| 가전 특화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 실내기 2대 | 거실+침실1 | | 4,100,000 | 4,100,000 | 4,200,000 | 해당없음 |
| | | 실내기 3대 | 거실+주방+침실1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200,000 |
| | | 실내기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6,300,000 | 6,300,000 | 6,500,000 | 해당없음 |
| | | 실내기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7,600,000 |
| | | 실내기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8,700,000 |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능) | 실내기 2대 | 거실+침실1 | | 4,300,000 | 4,300,000 | 4,500,000 | 해당없음 |
| | | 실내기 3대 | 거실+주방+침실1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5,600,000 |
| | | 실내기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 7,000,000 | 7,000,000 | 7,100,000 | 해당없음 |
| | | 실내기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8,200,000 |
| | | 실내기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9,500,000 |
| | 식기세척기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340,000 | 1,340,000 | |
| | 조명 업그레이드 | 거실 간접조명+특화조명(디밍/색온도 조절, 리뉴얼스위치 기능추가 포함) | | 2,300,000 | 2,100,000 | 2,300,000 | 2,900,000 | |
| | 현관 미니월패드 | - |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에어샤워 패키지는 독립 옵션 제공이 불가하며, 욕실특화 패키지는 개별 아이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수납 강화형 불박이장은 침실2,3 가변형 벽체 통합형 선택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도벽 마감 업그레이드는 침실2, 3 가변형 벽체 선택형(홈오피스)과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40-013-983901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 추가선택품목대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상기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0101010101'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대금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대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 추가선택품목대금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부사항은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계약 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관련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자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설치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설치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전용 콘센트 및 냉매배관과 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옵션 선택시 공사비용에 차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연결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총 2개소의 냉매 매립배관 및 에어컨 콘센트만 제공됩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및 Hi-oT와 에어컨 연동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에 한하며, 천장형 또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개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연동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유선리모컨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 및 조명 관련

- 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및 조명 업그레이드(유상) 선택에 따라 조명기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 설치로 인해 우물 천장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유상) 중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 및 주방 아일랜드 조명은 디밍제어 및 색온도 제어가 미적용됩니다.

■ 전체 추가선택품목 관련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가상한제 비대상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및 기본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마감자재목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m^2)]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2년 11월 04일 승인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59A, 74A, 84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CG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옥상구조를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대 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생활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대, 포장 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등은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터넷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 행위)는 사업 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 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문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동 표시, 주동 외관(동 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헬름 및 지하주차장 헬름용 DA, 주변 현황(단지 내외 용벽 및 조경석, 조경 시설, 단지 주변 레벨 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밸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피난대피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 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내부 불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불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 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피해보상은 「집건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도시계획,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담장,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차 수판,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진행 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 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동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부를 둘러싼 도로 등(대지소유 : 아파트 입주민, 이용 : 공공에 이용토록 함)에 대하여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 교육청 배치기준에 따라 유치원생은 10권역(신정지구)에 배치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울산중앙초등학교로 배치할 계획이며, 중학생은 옥동·야음중학교군에 배치 가능하며, 고등학생은 남부학교군에 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지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등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지하 주차대수는 404대(공동주택용 373대, 균린생활시설 31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균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공간은 주거/비주거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부 겹치는 부분 있습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 2.7m 이내로 지하 1층 주차구획까지 진입가능)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타입별 초과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201동, 202동 하부 지상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 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산지, 운동 시설, 부지 고저차 등 주위 환경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 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장식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 및 계획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외부계단 및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방범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이 접해있어 소음, 냄새, 진동, 방범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에 취약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경우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 및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욕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발코니 내 대피공간(하향식피난구)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프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등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공동장소인 광장,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각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층 세대는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AS 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은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이며,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에 소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 혹은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에 비치된 마감재목록표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차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을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천정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 소등스위치, 월패드, 미니월패드(유상), 디지털도어록, 주방TV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 (식탁/침대 등 이동형 가구, 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피난 대피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경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 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 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 (건축 용벽, 토목 용벽, 돌 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교통망 및 도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회차공간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차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차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는 201동, 202동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 차량 전조등 및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등은 일부 동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옥상 및 건축물 높이에 따른 측벽에 피뢰 설비가 설치되오니 인지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 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 헬리포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주방TV,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카탈로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마감(지상4층~42층)은 외부용 수성페인트마감으로 색상 및 패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벽 디자인, 색상, 마감재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문주, 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D/A, 제연휀룸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지붕층 옥상정원에 대해 식재 종류, 수량, 위치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린이 놀이터 위치, 놀이기구 사양, 수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지붕층 외부계단 및 제연휀룸의 마감은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지붕 및 외부 난간은 실시공시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또는 투시형 난간으로 설치되며, 디자인, 색상,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외벽 디자인(식재마감 등)에 의해 일부세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 방향,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소음 및 반사광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배기휀 등이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 상가지붕 등에 설치되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저층 세대 입주민께서는 모형상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 및 옹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의 경우 접근성에 있어 다른 주동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택배차 등 차고가 높은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은 201동과 202동사이 차량출입구를 통해 지하1층 주차장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유효높이는 2.7m이며, 지하2~5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등 차고가 높은 차량은 출입이 제한됩니다.(단, 차고가 높은 차량 중에서도 주차장 유효높이 제한으로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해당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시공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외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계단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레벨차이에 의한 주민 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필로티, 휴게공간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 노출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중 공개공지를 통한 단지 출입구 진입부위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바닥을 포장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주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주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의 각 주동 출입구 전면에 구조계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코아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에 의한 옹벽 및 범면의 경우 형태 및 구간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주출입구로부터 각 주동 주출입구까지의 접근의 형평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옥탑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옥상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 구조물(장식물) 디자인은 1단지와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VII- 0.224g 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

단 저층부 형태 및 디자인 및 아파트 주동 옥상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에 따라 본 시공시 각 별도로 위치가 삭제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설계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내 비상도로가 연결이 안될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운동기기와 블박이형가구(신발장, 랙커 등) 설치가 포함(테이블, 의자, 소파 등 이동식 가구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데스크 및 블박이형가구의 형태는 카탈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전체가 외부 도로에 접해있으며, 이는 24시간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본 단지에서의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단지북측 및 서측의 공개공지는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본 단지에서 임의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해당 동의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특히, 201동, 202동 저층세대는 일조, 조망에 아주 불리할 수 있음)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201동, 202동 2층 및 19층 제연헬룸과 2층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1~202동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옥상(지상3층~지상4층 사이)에서 201동 지상3층 북서측 데크 공간 및 202동 지상3층 북측 데크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방 배기탈취 유닛, 실외기 등 각종 설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해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복도 및 계단실 일부에 세대 공급용 가스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피난안전구역은 19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그릴위치 및 층고, 주변 단위세대(호실)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아파트용 소화펌프실 및 각 세대 욕실 배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19층 피난안전구역과 지상2층 제연헬룸에 소방용 제연휀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상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이 201동, 202동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예정임. 설치 위치 및 크기, 사양, 디자인 등 이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지상3층에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데크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에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동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이용해서 접근가능하며, 어린이집, 경로당이 지상3층에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헬름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출입구, 부출입구의 차단기 위치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가 102동 지상1층 북측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및 정압기 설치 위치가 101동 지상1층 북서측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201동 지상1층 북서측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등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202동 지상1층 북동측, 남동측 인근에는 주차장 환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훌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보일러 연도, 주방 렌지후드 배기구, 공용욕실 배기구 및 부부욕실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및 배관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근생창고에는 금, 배기 설비 외 별도의 제습기가 설치되지 아니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빗물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IT층의 외부공간(지상3층 지붕)은 각 동 지상4층 ELEV홀과 연결된 외부계단만을 이용해 접근 가능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IT층 외부공간(지상3층 지붕)의 출입문과 인접한 각 동 지상4층 84A타입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민께서는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IT층의 외부공간(지상3층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별 유의사항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따라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 소등스위치, 미니월패드(유상), 월패드, 주방액정TV, 디자털도어록 등의 제품 제원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 분전반, 팬트리 또는 창고 내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상/하 또는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 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포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적용된 마감 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 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1, 발코니2(다용도실), 샤워부스, 육조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 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 (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기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는 벽지 바름, 걸레받이, 천장 몰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 한하여 바닥 배수구 및 선홍통이 설치되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싱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레인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 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 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세대 가스 배관 시공 시 가구 간섭 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세대에 연출된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단 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각 부분의 창호 크기 등은 세대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별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일부 세대의 창호 및 난간 사이즈는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 가구와 주방가구, 욕실 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 창호, 방화문 및 발코니 핸드레일은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의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실외기실 및 보일러 설치공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의 도어 및 그릴, 대피공간 도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 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유상) 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된 타일류는 본 공사시 패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 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 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돋기 위한 견본주택 임시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 선 흠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평면 구조에 따라 일부 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안방 앞 발코니에 설치 가능하오니 계약 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세탁기 설치공간에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적층시 건조기에 의해 창문이 가려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조기 설치 시 채광 및 창호 열림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실 선회 문 등 선택사항에 따라 안방 앞 발코니에 건조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문 및 세대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가전류 등 유상옵션 품목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또는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월패드, 미니월패드(유상), 주방TV, 세대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의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발코니 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류는 실시공시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정 높이는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정고 및 길이/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 박스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설치되는 불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 (워크인 타입 등)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의 경우 일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거실 외부의 발코니 및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배치 및 설치, 타입, 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다용도실)에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 에어컨 및 세대 환기유니트(일부세대는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창문이나 실외기루버를 닫아놓아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을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자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주차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과 주차위치 시스템은 기본 스마트폰 APP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며, 스마트키는 세대당 1개 지급 기준입니다.(추가 필요시 입주자는 별도 구매 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미니월패드(유상), 주방TV,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토(=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하이오토 서비스(현대오토에버)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 및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토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토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토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세대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세대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주방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 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 환기장치, 우수, 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 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배기로 다른 세대의 냄새가 유입될 수 있고, 배기 성능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하향식 피난구실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내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해당 배관은 상부세대용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실에 세탁배수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가스 배관 입상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세대 내 지상4층~지상18층까지 소방관 진입창호가 설치되며, 해당 창호는 지상20층~지상42층과 다르며, 본 공사시 창호크기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의 경우 타입별 적용부위 및 형태가 다르니 계약 시 상담데스크를 통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혹은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유상옵션 사양인 에어샤워시스템은 세대현관 중문 선택시에만 입주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외형 및 자재 사양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사양인 에어샤워시스템 선택시 신발장내 가구 디자인이 변경되며 필터 및 집진봉투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면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및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배기 덕트가 천장속에 설치되어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층~10층 세대의 안방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법정 소방시설인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세대(4~6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 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및 EPS/TPS실, 훈련실, MDF실, PIT 등의 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위치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은 지하1층~지상1층, 지상3층에 용도별로 각각 분리되어 설치되며 이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 진출 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가 지붕의 일부 옥상조경 구간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으며, 관리자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옥상조경의 세부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상3층에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동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하며, 어린이집, 경로당이 지상3층에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세부용도는 1단지와 다른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용도별 천장고는 구조, 설비등의 계획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기준에 따라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과 202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홀로 연결되는 문이 설치되며, 이는 유사시에만 열리는 구조로 평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해 간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아파트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피해보상은 「집건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 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VII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지정 개시일 약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0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1개, 어린이집 1개, 주민공동시설(클럽하우스 1개, 북카페 1개, 다목적실 1개, 스터디룸 1개, 1인오피스 1개, 맘스테이션 1개),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호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지하1층 2.7m내외, 지하2층~지하5층 2.3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구 분 | 내진능력(MMI 등급) |
|--------|--------------|
| 0.224g | VII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표기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148,561,000,000원 | 제01282022-101-00145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비고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 구분 | 건축 감리 | 전기 감리 | 통신 감리 | 소방 감리 |
|------|-----------------|---------------|-------------|---------------|
| 회사명 | (주)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진일기술단 | (주)서광이에프 |
| 감리금액 | 1,666,552,800 | 664,500,000 | 253,000,000 | 1,152,944,145 |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케이알파트너스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간에 2022년 07월 07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케이알파트너스,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아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급계약서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해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케이알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 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케이알파트너스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 및 공급계약에 관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케이알파트너스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서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협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케이알파트너스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시행수탁사) | 시행위탁사 | 시공사 |
|--------|-------------------------------------|--|----------------------|
| 상호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주)케이알파트너스 | 현대엔지니어링(주)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1001~1004호 (우동, 인텔리움센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 법인등록번호 | 110111-7125720 | 180111-1347384 | 110111-2153015 |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 홈페이지 : <http://hillstate-hec.co.kr/ms-central>
- 분양문의 : 052-258-323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